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7. 14.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6월 2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7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9. 7. 3)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 案 說 明 者 : 행 정 국 장 송 요 출)

가. 제안이유

- 2008년 1월 1일부터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을 기초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 2008. 1. 1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는 종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2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호적법」에 의거 제정되어 호적신고 또는 신청을 지연할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존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8 호
----------	---------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호적법」 폐지와,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호적법」을 기초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본칙)
- 나.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는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호적법』 폐지('08. 1. 1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9. 3. 19 ~ 4. 8, 20일)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절차는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르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의 처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3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